

〈별지 제1호 서식〉

접수번호

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

(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서)

담 당	팀 장

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
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위하여 공사에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- 아래 내용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중요사항이오니 누락되는 부분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① 신청인 정보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	
	휴대전화 (전화)		이메일		
	주 소	()			
	착오송금인 관계	☐ 본인 ☐ 대리인(대리 대상 : ☐ 미성년자 ☐ 군복무자 ☐ 해외거주자 ☐ 기타 ☐ 법인 ☐ 비법인단체			
② 수신방법	☐ 휴대전화 문자 ☐ 이메일 (중복가능)				
③ 착오송금인 정보 (보낸사람 정보)	※ 신청인이 본인의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생략합니다.				
	개인	성 명			
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-		
	법인 (비법인단체)	상 호			
		대표자성명			
		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)			
	휴대전화 (전화)		이메일		
주 소	()				
④ 송 금 액 (보낸 금액)	총송금액	금	원	⑤ 송금일자 (보낸 날짜)	년 월 일
	착오송금액	금	원		
⑥ 송금 계좌 정보 (보낸 계좌 정보)	☐ 금융회사		⑦ 수취계좌 정 보 (받은 계좌 정보)	금융회사	
	계좌번호			계좌번호	
	예 금 주			예 금 주	
	☐ 간편송금 계정 ☐ 무통장입금				
⑧ 송금방법 (보낸방법)	☐ 인터넷뱅킹 ☐ 모바일뱅킹 ☐ 간편송금 ☐ 텔레뱅킹 ☐ 자동화기기(CD/ATM) ☐ 창구거래				
⑨ 착오송금 수취인과의 관계	☐ 무관 ☐ 지인 ☐ 거래상대방 (거래처) ☐ 기타 ()				
⑩ 착오유형	☐ 금융회사 또는 계좌번호 착오 ☐ 송금액 착오 ☐ 수취인 혼동 ☐ 중복이체 ☐ 기타 ()				
⑪ 송금경위	■ 송금하고자 한 금융회사 : ■ 송금하고자 한 계좌 : ■ 송금하고자 한 금액 :				

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

금융회사 대표이사 귀하
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6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,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데 동의합니다.

1.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: 예금보험공사

2.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

-

* 기재사항: 송금(출금) 금융회사의 이름 (예: ○○은행)
(간편송금, 무통장입금인 경우, 별도 지정한 수령계좌의 자금이체금융회사등의 이름)

3. 제공할 금융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

-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날 현재 예금계좌 의 잔액

* 기재사항: 송금(출금) 금융회사의 계좌번호 (예: XX-XXXXXXXX-XX)
(간편송금, 무통장입금인 경우, 별도 지정한 수령계좌의 계좌번호)

4.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

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중 발생한 회수관련 비용의 정산

※ 금융거래자(착오송금인)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제공 등의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5.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
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종료일

년 월 일

금융거래자 본인 성명(상호) : (인 또는 서명)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

권리양도 통지 위임장

☐ 대리인

성 명 : 예금보험공사 사장
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

본인은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

- 다 음 -

본인이 _____년 ____월 ____일에 <u>잘못 송금한 금전을 받은 자</u> 의 (금융회사: _____)
<u>계좌번호</u> _____계좌로 송금한 금 _____원정(₩ _____) 중에서
잘못 송금한 금 _____원정(₩ _____)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 양도 사실 통지

____년 ____월 ____일

☐ 본인 (위임인, 잘못 송금한 자)

성 명 : _____ (인 또는 서명)
주 소 : _____

※ 송금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날인 또는 서명하고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(잘못 송금한 자)의 인감을 날인

안 내 말 씀

안녕하십니까. 예금보험공사입니다.

위의 잘못 송금한 자(위임인)가 귀하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여 금융회사를 통하여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처 상이, 무응답 등의 사유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사에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반환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공사가 양도받아 동 반환요청 안내서(권리양도 통지서)를 송부하오니, **귀하의 계좌에 위 잘못 송금된 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신 후 안내드린 공사 가상계좌로 기한 내에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 공사의 가상계좌로 전액 반환이 확인되면 공사의 반환지원절차는 종결됩니다. 자진반환 기한 경과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, 이의제기는 자진반환 기한 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상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(kmrs.kdic.or.kr) [착오송금 수취인-이의제기]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
반환과정에서 이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반환 당일에 증빙자료와 환급 받을 계좌정보를 이 메일(kmrs@kdic.or.kr) 또는 팩스(02-758-0270)로 보내주시면 환급하여 드립니다.

귀하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※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(kmrs.kdic.or.kr) [착오송금 수취인]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

※ 문의 : 1588-0037